

[별표6]<개정 1994·8·23, 1995·8·4, 1996·7·26>

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9조관련)

가.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	영업정지기간	과징금의금액
1.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	법 제50조제1항제1호	2월	2,000만원
2.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한 때	법 제50조제1항제2호	4월	4,000만원
3.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	법 제50조제1항제2호	3월	3,000만원
4.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	법 제50조제1항제3호	4월	4,000만원
5.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	법 제50조제1항제3호의2	2월	2,000만원
6. 삭제<1995·8·4>			
7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	법 제50조제1항제5호		
· 10명이상 사망한 때		4월	4,000만원
·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		3월	3,000만원
·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		2월	2,000만원
8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	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	3월	3,000만원

나.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율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영업 정지의	과 징 금 의 율 (%)			
			5천만원	1억원	5억원	30억원

		기간	까지			이상
1.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	법 제50조 제2항제1호	8월	16	12	8	4
2. 도급한도액 또는 도급하한선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	법 제50조 제2항제2호	6월	12	9	6	3
3.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(재하도급 포함)한 때	법 제50조 제2항제3호	6월	12	9	6	3
4. 일반공사 또는 특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락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	법 제50조 제2항제3호	4월	8	6	4	2
5.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	법 제50조 제2항제3호	4월	8	6	4	2
6.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	법 제50조 제2항제4호	2월	4	3	2	1

비고 : 과징금의 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등의 각 구역사이의 해당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.

다.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	영업정지기간
1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	법 제52조제1항제2호	6월
2.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	법 제52조제1항제4호	8월
3.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	법 제52조제1항제4호	6월
4.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	법 제52조제1항제6호	6월
5.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법 제5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잡시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	법 제52조제1항제7호	8월
6.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	법 제52조제1항제7호	6월

을 현저하게 단축되게 한 때		
7.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	법 제52조제1항제7호	4월
물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		
8.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	법 제52조제1항제7호	2월
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		
용한 때		
9.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	법 제52조제1항제7호	2월
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의2 가목	
10.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	법 제52조제1항제7호	1월
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	의2 나목	
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		
검토·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		
11.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	법 제52조제1항제7호	
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	의2 다목	
우로서		
○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		3월
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		
실시한 때		
○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		2월
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		
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		
시하지 아니한 때		
○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		1월
위반한 때		
12.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	법 제52조제1항제7호	2월
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의2 라목	
13.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	법 제52조제1항제8호	6월
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면허취소의 요		
구를 받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		